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5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황 희·김태년·박용갑

신영대 • 이용선 • 안규백

김병주 · 한민수 · 이건태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 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 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설치에 관한"을 "설치는 다음 각 호의"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2. 항공기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는데 필요한 공항 또는 비행 장 상공의 공역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공역과 중복되 지 아니할 것
-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방지를 위하여 착륙 대의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의 길이가 국제민간항공 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 치를 설치할 것
-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시설 등이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되는 공항 및 비행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항 및 비행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제24조(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의 설치기준 등) 제6조제1항	의 설치기준 등)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	
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u>설치</u>	<u>설치는</u>
<u>에 관한</u> 기준(이하 "시설설치	다음 각 호의
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	<u>에 따른</u>
로 정한다.	<u>다</u> .
<u> <신 설></u>	1.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
	<u>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u>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u><신 설></u>	2. 항공기가 공항 또는 비행장
	에 착륙하는데 필요한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공역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 상
	공의 공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u>것</u>
<u><신 설></u>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
	의 활주로 이탈 방지를 위하
	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설
	정된 구역을 말한다)의 길이
	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
	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u> <신 설></u>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착륙대·유도로의 길
	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지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u>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